

<1.20(목) 조간 (인터넷 1.19(수) 12:00 이후)부터 사용>



# 보도자료

▶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윤태 과장  
김은철 서기관

▶ 2011. 1. 19. 배포  
▶ 총 6쪽 (사진 없음)

T E L : 02-2110-7355  
E-MAIL : polinomy@moel.go.kr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고용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국민의 지지받는 공무원 노사관계로 자리매김 해야 - 고용노동부,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 맞아 향후 정책·조 유지계획 밝혀

- 고용노동부는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이하 공무원노조법)」 시행 5주년(1.28)을 맞아 그간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평가하고
  -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지난 2006년 1월,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정부 수립 58년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ILO 및 OECD 회원국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.
-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, 근무 조건 결정에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「노사화합 공동선언」 같은 협력사례가 확산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(붙임 참조).
-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노조 가입도 증가, 가입대상 공무원 299,000여 명 중 54.1%에 해당하는 161,753명이 가입(2010년 12월말 기준)하는 등 높은 조직률\*을 유지하고 있다.
  - \* 10% 정도('09년 10.1%)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 노조보다 5배가 넘는 높은 조직률을 유지

<연도별 공무원노조 현황>

연 도	노동조합수	조합원수	조직률(%)
2006년	78	63,275	21.8
2007년	98	173,125	59.7
2008년	95	215,537	72.1
2009년	95	158,910	53.1
2010년	99	161,753	54.1

※ '09.10.20 전공노에 '법상 노조아님 통보'이후 조직률 감소(72.1%→54.1%)

-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공무원 노사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**다각적인 노력**을 기울여 왔다.
- 그러나, 일부 기관 및 노조에 불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(붙임 참조).
  - \* 노사 불법관행 예시: 위법한 단협체결, 해직자 노조활동, 휴직없는 노조 전임자 활동, 근무시간중 노조활동, 부당한 인사개입, 시국선언·정당 가입 등 불법 정치활동
- 반면, 최근 정치투쟁 등 불법활동에 염증을 느낀 노조들이 노사 평화선언, 정치적 중립 선언,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**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전환**을 모색하고 있고,
  - \* ▲'10.5.3 해운대구 ▲'10.6.25 농산물품질관리원 ▲'11.1.7 경남교육청 등
  - 작년 7월에는 정부(행정안전부)와 전국단위 4개 공무원노조가 협약식을 갖고 ▲준법 ▲정치적 중립 ▲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선언하는 등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, 공직사회내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.
-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단체의 **합법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**하되,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**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**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다.
- 우선, 공무원들이 **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**하고 **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**하고
  - 정당한 노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**정부 내 조직 인프라**를 확충하였으며
  - 각 지방고용관서에는 '전담 근로감독관'을 운영하여 자치단체, 교육청 등의 교섭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하였다.

- 이와함께 제도 시행 초기, 범외단체로 활동하는 전공노 등의 **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**했고
  -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각종 조치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였다.
    - \* ▲관계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('06.2.8), ▲「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」 시행('06.3.22), ▲불법단체 점용사무실 폐쇄('06.9.22)
-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,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수의 해직자가 노조 임원으로 활동한 전공노에 대해 **'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'을 통보**(2009.10.20) 했으며
  -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합공무원노조(가칭 '전공노')의 **설립신고서를 반려**(2009.12.24)했다.
- 한편, 그동안 체결된 공무원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**위법·비교섭 사항 등 문제가 있는 협약(81개)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**를 하였다.
-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부 공무원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 하며 반발해 왔으나, 고용부는 「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사건」 등 **8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**,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의 **정당성이 확인되는 계기**가 되었다.
- 고용노동부는 “공무원 노사관계는 **국민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** 되어야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립과 투쟁 보다는 **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간의 노사관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**”이라고 강조하고
- “정부는 **법과 원칙의 정책기조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**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, 공무원노사의 **사회공헌 사업 지원, 기관별 노사관계 진단 및 무료컨설팅 지원**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## 공무원 노사협력 우수사례

연번	기관명	구체적인 사례
1	군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합동교육 및 노사한마음 행사 (체육대회 등)를 통한 화합·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노사합동 위탁교육(노동교육원, 연간 120명)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▪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상생의 노동운동 추진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분담을 위해 기본급·초과근무수당 삭감을 통해 총10억원 예산을 확보 1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성 제고</li> <li>* 매년 불우시설 자원봉사,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등 진행</li> </ul> </li> <li>▪ 정기 간담회 및 노사협의회,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통의 노사문화 조성 및 직원의 고충·불만 해소 노력</li> </ul>
2	대전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소통과 피드백을 통한 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 구축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소통과 화합의 장」 운영 및 민선5기 공무원 후생복지 발전지표 설정</li> </ul> </li> <li>▪ 노사합동 워크숍,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</li> <li>▪ 어려운 이웃 지원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급여반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,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, 노조출범 화환 대신 사랑의 쌀 기증, 독거노인 세대 등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▪ 불법 관행 예방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회적 이슈보다 공무원 권익향상에 노력, 노사화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에 주력</li> </ul> </li> </ul>
3	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중앙행정기관 최초 “脫정치 선언”인 「노사화합 공동선언문 채택(10.6.25)」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 계기 마련</li> <li>▪ 노사 공동으로 「행복하고 활력있는 직장만들기」 계획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열린 의사소통, 구성원 역량강화, 합리적 성과평가, 후생복지 증진 등</li> </ul> </li> <li>▪ 1사1촌 결연 및 지역시설 봉사활동, 농촌 일손돕기 등 공동체 사랑나눔 실천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 수행</li> </ul>
4	경남교육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도교육청 단위 최초로 「공무원노사 상생·협력 다짐대회」 개최(10.6.25)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노력</li> <li>▪ 공무원노조의 “정치적 중립 선언”을 통해 합법적 노동운동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확산 노력</li> </ul>

## 공무원 노사관계 주요 불합리한 사례

연번	구분	사례내용
1	노조의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인사권 행사 반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석인 ○○시 ○○구청장에 도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자, 공무원 노조는 ‘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인사권에 관여한다’며 반발, 구청장 출근 저지 및 취임식 방해 [○○시청, ‘07.11월]</li> <li>▪ ○○도 소속 4급 공무원이 ○○시 국장으로 전보하자 공무원 노조는 사전협의 없이 행한 전보인사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시장을 비난 [○○시청, ‘08.7월]</li> </ul>
2	위법·부당한 단체협약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무원 단체협약에 정책결정 및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비교섭 사항 등 위법·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교섭관행 [다수 자치단체, 교육청 등]</li> </ul>
3	유급 노조전임자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노조 간부가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경미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는 사례 [자치단체에서 유사사례 다수]</li> <li>※ '08.6월 기준 불법 노조전임자 100여명, 전임자 수준에 가까운 인원 약 500여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(행정안전부)</li> </ul>
4	조합원 자격이 없는 (해직자 등) 자 노동조합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(가칭)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및 (구)전공노에 대해 법상 ‘노동조합이 아님’을 통보</li> <li>※ 서울행정법원은 해직자·업무총괄자 가입을 이유로 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('10.7.23, '기각')</li> </ul>
5	근무시간중 허가 없는 노조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 실시 및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동조합 임원선거 유세 등 활동</li> <li>▪ 근무시간중 민원접견실에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개최 [○○시청, ○○구청, ○○군청 등]</li> </ul>
6	공무원노조 정치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한미FTA협상 반대, 쇠고기 수입반대, 대운하 중단 촉구,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등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참석·기자회견 개최·성명서 발표 등 ['07.3월~'09.12월까지 다수]</li> <li>▪ 공무원노조의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성명 발표 및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 개최 ['09.7.19]</li> <li>※ (가칭)전공노 위원장 등 국가(지방)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</li> </ul>

## 공무원 노사관계 연혁

- '05.1.27 공무원노조법 제정 · 공포
  - ※ '98.2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1단계 직장협의회, 2단계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한바 있으며, ILO 권고 등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제정
- '06.1.27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
- '06.1.28 공무원노조법 시행
- '06.9 '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(공노총)'을 시작으로 주요 공무원 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완료('07.10.17)
  - ※ 공무원노총 '06.9.4 → 민주공무원노조 '07.7.10 → 전국공무원노조 '07.10.17
- '07.12.14 정부와 '공노총' 등 10개 노조간 최초 단체협약 체결
- '09.9.21~22 전공노·민공노·법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결의
- '09.10.20 '전공노'에 대해 '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' 통보
- 통합공무원노조(가칭 전공노) 설립신고서 2차례 제출 ('09.12·'10.2) → 반려